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 - 12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본 제정 조례안은 「도로법 등」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관련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(도로법 등) 내용 반영 정비 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)
- 나.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 (안 제2조)
  -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신·재생 에너지 설비
- 다. 점용료 산정기준 [별표1] 개정 및 신설 (안 제3조)
  -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,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 신설
- 라. 법제처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0. 23. ~ 2018. 11. 12. (의견제출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(2018.11.15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6) 신구조문대비표 1부.
- 7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영””을 ““영”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생활정보지”를 “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생활정보지”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신·재생에너지 설비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)

제4조제1항 중 “점용한”을 “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제1항”을 각각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 1”을 “제3조 및 법 68조”로, 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”을 “납부한”으로, “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”을 “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당하는 경우에는”을 “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”로, “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”을 “점용”으로 한다. 제11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”로,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의2 중 “점용료·변상금,가산금”을 “점용료·변상금, 가산금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**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
2.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,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)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 · 물건 · 그 밖의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"<u>영</u>"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삭 제</p> <p>2. <u>생활정보지</u>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. 다만,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<u>한한다</u>.</p> <p>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)</p> <p>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<u>구청장</u>"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"<u>도로</u>"라 한다)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,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</p>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"<u>영</u>"이----- ----- -----.</p> <p>2. <u>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생활정보지</u> -----,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한다</u>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신 · 재생에너지 설비</u>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)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</u></p>

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

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

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-----  
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-----  
----- 제3조 및 법 68조 -----  
----- 납부한 -----  
-----  
-----  
-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 
보다 10퍼센트 증가된 -----

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삭 제

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세입 구분) ①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(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)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.

-----.

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-----

----- 1만원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-- 점용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세입 구분) ①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-----

----- 한정한다-----.



② (생략)

제11조의2(준용규정) 점용료·변상금,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[별표 1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. 영 별표 3 제7 호에서 정 한 점용물	가로관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 한 금액
2. 영 별표 3 제1 1호에 서 정 한 점 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 성을 위한 조례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 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<신 설>			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준용규정) 점용료·변상금, 가산금-----  
-----  
-----.

[별표 1]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. 영 별표 3 제7 호에서 정 한 점용물	가로관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1를 곱 한 금액
2. 영 별표 3 제1 1호에 서 정 한 점 용물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 성을 위한 조례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, 비가리 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	신·재생에너지 설비 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따라 설치하 는 경우)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**

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도로법등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·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건설관리과 강윤미
연 락 처	02-3153-9702